

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

I. 법 제 11 조제 1 항제 1 호

-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연번	위원회명	위원 총원(명)	공무수행 사인(명)	설치근거 규정(조항)
1	학교운영위원회		11	학교 내규에 따름
2	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		4	학교 내규에 따름
3	학교인사위원회		6	학교 내규에 따름
4	학교입학위원회		9	학교 내규에 따름
5	교원징계위원회		3	학교 내규에 따름
6	학부모위원회		10	학부모운영 규정에 따름

II. 법 제 11 조제 1 항제 2 호

-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
연번	법인·단체·기관명	공무수행사인(명)	위임·위탁규정(조항)
1	해당사항없음		
2			

※ 위임·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·기관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

III. 법 제 11 조제 1 항제 3 호

-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
연번	파견인원(명)	파견근거규정(조항)
1	해당사항없음	
2		

IV. 법 제 11 조제 1 항제 4 호

-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·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·단체

연번	법인·단체 명	공무수행사인(명)	심의·평가규정(조항)
1	해당사항없음		
2			

※ 심의·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·단체명을 ‘개인’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